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찰, 질병진단 및 분석,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(4급 1명, 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, 6급 2명, 7급 2명, 연구사 12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0. 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

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내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7호를 제2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대기측정망 설치·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
18.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·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19. 기후·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
20.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·발표에 관한 사항
21.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

제7조제8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
21. 고체연료 사용 제한 및 청정연료 사용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0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6.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
27.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·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3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장의4(제23조의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의4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

제23조의4(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)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·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, 질병감시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,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·농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
2. 보안·문서·인사·관인관리·예산·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3.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
4. 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
5.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

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
2.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대응매뉴얼 수립
3.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

4. 야생동물 질병 발생 정보분석·통계작성 및 현황 공개

5.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

6.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도·감독과 환경부 소관 감염병·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

7.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전염병(감염병) 대책위원회 운영

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·취소·관리 및 기술보급
2.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
3. 야생동물 질병 진단·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
4.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·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
5.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

제37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4와 같다.

별표 8 중 총계 “394”를 “38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94”를 “387”로 하며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업서기·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 “10”을 “9”로, 공업연구관·농업연구관·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“47”을 “44”로, 공업연구사·농업연구사·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“60”을 “57”로 한다.

별표 10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11의 제목 중 “제37조제5항”을 “제37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중 총계 “621”을 “617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621”을 “617”로 하고,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3”을 “2”로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8”을 “9”로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“90”을 “89”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“63”을 “62”로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“57”을 “55”로 한다.

별표 12의 제목 중 “제37조제5항”을 “제37조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중 총계 “621”을 “617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621”을 “617”로 하고,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3”을 “2”로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8”을 “9”로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“94”를 “93”으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“69”를 “68”로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“52”를 “50”으로 한다.

별표 13의 제목 중 “제37조제6항”을 “제37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중 총계 “307”을 “304”로 하며, 일반직 계 “307”을 “304”로 하고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“47”을 “46”으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“36”을 “35”로, 행정서기·공업서기·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“35”를 “34”로 한다.

별표 14의 제목 중 “제37조제6항”을 “제37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중 총계 “309”를 “306”으로 하며, 일반직 계 “309”를 “306”으로 하고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“51”을 “50”으로, 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“43”을 “42”로, 행정서기·공

업서기·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“30”을 “29”로 한다.

별표 15의 제목 중 “제37조제7항 본문”을 “제37조제8항 본문”으로 한다.

별표 16의 제목 중 “제37조제7항 단서”를 “제37조제8항 단서”로 한다.

별표 16의2의 제목 중 “제37조제8항 본문”을 “제37조제9항 본문”으로 한다.

별표 16의3의 제목 중 “제37조제8항 단서”를 “제37조제9항 단서”로 한다.

별표 17의 제목 중 “제37조제9항”을 “제37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7의3의 제목 중 “제37조제10항”을 “제37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7의4의 제목 중 “제37조제11항”을 “제37조제1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5항 관련)	
총계	33
일반직 계	33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1
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전산사무관·통계사무관·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	1
행정주사·공업주사·보건주사·전산주사·환경주사·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4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보건주사보·전산주사보·환경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	4
행정서기·공업서기·보건서기·전산서기·환경서기·시설서기 또는 방송서기	4
공업연구관·농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	3
공업연구사·농업연구사·보건연구사·환경연구사 또는 수의연구사	15

현행	개정안
제7조(생활환경정책실) ① ~ ⑥ (생략) ⑦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0. (생략) 11. <u>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</u> 12. <u>연료의 종류별 황합유기준의 설정</u> 13. <u>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·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</u> 14. ~ 16. (생략) <u><신설></u> 17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7조(생활환경정책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. 1. ~ 10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14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<u>대기측정망 설치·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</u> 22. (현행 제17호와 같음) 18. <u>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·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</u> 19. <u>기후·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</u> 20. <u>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·발표에 관한 사항</u> 21. <u>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</u>

⑧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사항
1. ~ 9. (생략)	⑧ ----- -----.
10. 대기측정망 설치·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	1. ~ 9. (현행과 같음)
11.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·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	<삭제>
12. 기후·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	<삭제>
13.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·발표에 관한 사항	<삭제>
⑨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⑨ ----- -----.
1. ~ 19. (생략)	1. ~ 19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20. 연료의 종류별 황합유기준의 설정
<신설>	21. 고체연료 사용 제한 및 청정 연료 사용에 관한 사항
⑩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⑩ ----- -----.
1. ~ 25. (생략)	1. ~ 25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26.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

<신설>	27.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·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
⑪ ~ ⑳ (생략)	⑪ ~ ⑳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환경건강연구부) ①·② (생략)	제13조(환경건강연구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~ 14. 삭제	
15. 야생동물 질병 예찰(豫察)과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	<삭제>
16. 야생동물 질병 진단·분석 기법의 개발 및 보급	<삭제>
17.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하는 인수(人獸)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	<삭제>
18.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	<삭제>
19. 환경부 소관 감염병·가축 질병 위기대응 지원	<삭제>
20.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	<삭제>
21. (생략)	21. (현행과 같음)
㉔ ~ ㉖ (생략)	㉔ ~ ㉖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제5장의4

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

제23조의4(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

원)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
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
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
질병감시팀·질병대응팀 및 질
병연구팀을 두되, 질병감시팀장
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
사무관·공업사무관·보건사무
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
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,
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
은 공업연구관·농업연구관·
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
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
사항
2. 보안·문서·인사·관인관리
·예산·결산 및 회계에 관한
사항
3.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

기법에 관한 연구

4. 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 및
포상금 지급

5.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
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
하지 않는 사항

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
분장한다.

1.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
수(人獸)공통감염병의 예방
및 관리방안 연구
2.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
교육·홍보 및 대응매뉴얼 수
립
3.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
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
4. 야생동물 질병 발생 정보분
석·통계작성 및 현황 공개
5.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
위한 역학조사
6.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
도·감독과 환경부 소관 감염
병·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
7.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
통전염병(감염병) 대책위원회
운영

	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· 취소·관리 및 기술보급 2.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 3. 야생동물 질병 진단·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.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 · 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 5.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
제3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④ (생략)	제37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의4와 같다.
⑤ ~ ⑪ (생략)	⑥ ~ ⑫ (현행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)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8]

국립환경과학원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394	387	-7
일반직 계	394	387	-7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임 업서기·보건서기 또는 환경서기	10	9	-1
·	·	·	
·	·	·	
공업연구관·농업연구관 ·보건연구관 또는 환경 연구관	47	44	-3
·	·	·	
·	·	·	
공업연구사·농업연구사 ·보건연구사 또는 환경 연구사	60	57	-3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1]

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6항 본문 관련)

.	.	.	
---	---	---	--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21</u>	<u>617</u>	-4
일반직 계	<u>621</u>	<u>617</u>	-4
·	·	·	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<u>3</u>	<u>2</u>	-1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<u>8</u>	<u>9</u>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	<u>90</u>	<u>89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<u>63</u>	<u>62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	<u>57</u>	<u>55</u>	-2
·	·	·	

[별표 12]

유역환경청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6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621	617	-4
일반직 계	621	617	-4
·	·	·	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3	2	-1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8	9	+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	94	93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69	68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	52	50	-2
·	·	·	

·	·	·	
---	---	---	--

[별표 13]

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7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07</u>	<u>304</u>	-3
일반직 계	<u>307</u>	<u>304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	<u>47</u>	<u>46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<u>36</u>	<u>35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	<u>35</u>	<u>34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14]

지방환경청 공무원 정원표(제37조제7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09</u>	<u>306</u>	-3
일반직 계	<u>309</u>	<u>306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·공업주사·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	<u>51</u>	<u>50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	<u>43</u>	<u>42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서기·공업서기·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	<u>30</u>	<u>29</u>	-1
·	·	·	
·	·	·	